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 기준

제정 : 2013.01.18.

개정 : 2019.10.15.

개정 : 2021.05.20.

개정 : 2023.09.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회사 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란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발행자산”이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이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4조(자산배분 원칙)**

①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이하 ‘사전자산배분명세’라 한다)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하나 또는 다수의 투자신탁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처분한 자산은 주문접수시간 순서대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투자신탁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투자신탁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처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⑤ 공모 유가증권 청약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청약대상펀드(투자일임계좌 포함)를 선정하여,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참여일 전 총자산(3개월 평잔) 한도 내에서 펀드별 수요예측 참여금액(가격 및 수량) 에 따라 사전자산배분명세를 작성하고 안분 비례하여 운용본부장 또는 운용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조(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주문시간, 주문번호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 하거나 지정가격，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이 기준 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1항의 주문서 중 가격을 매매담당자를 통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6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① 사전자산배분명세는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운용본부장(본부장이 공석인 경우 운용팀장)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 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산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8조 (당일발행자산의 특례)**

①당일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②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③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 한다.

**제9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①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 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1.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운용부서장은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에서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4.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6.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7.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0조(운용담당자의 업무)**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중개업자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매매담당자의 업무)**

1.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1.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3. 준법감시인은 사전자산배분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제 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 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 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기준 제4조제5항은 2021년 5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개 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